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진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황 규 철 의원 등 8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1년 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1월 12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나.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2조)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안 제9조, 별표 1)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현행 조례 제5조, 제9조 및 별표 1은 상위법령의 조문번호와 법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제2조제2항 중 “「하천법 시행령」”을 “「하천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으로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9조 중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것 외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

- 별표 1 제4호의 산정기준란 비고 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